

서산시 조례 제 호

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, 제18조제4항, 제24조, 제25조, 제26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서산시 상수도급수조례증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07
----------	-----

제출년월일 : 1999년8월/8일

제출자 : 서산시장

## 1.개정이유

행정규제정비계획에 의거 규제 사항을 폐지 또는 완화 하고자함.

## 2.주요골자

가.공용급수장치의 설치조항 폐지(제7조).

나.급수공사시 신청인 소유의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 때 시장의 귀책사유  
면책조항 폐지(안 제18조).

다.권리의무의 승계 폐지(제24조).

라.급수정지 및 사용제한 사항 폐지(제25조).

마.급수중지시 급수장치 손료 면제(안 제26조).

바.급수중지기간 폐지(안 제26조).

## 3.참고 관련자료

○입법예고 : '99. 7. 20

○규제개혁심의회('99. 6. 23)결과 : 완화 및 폐지

의안번호	제 107호
의결년월일	1999. . . (제 회)

#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서 산 시 장
제출년월일	1999. 8/8.

# 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산시상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24조를(현행대로 하기 위하여)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4조(권리의무의 승계)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

## 수 정 안 대 비 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<p>제24조(권리의무의 승계)</p> <p>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</p>	(삭제)	<p>제24조(권리의무의 승계)</p> <p>①급수장치에 관한 권리의무는 당해 급수장치가 설치된 건물 또는 토지의 처분에 부수한다.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급수장치에 관한 소유 또는 관리권을 취득한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그 취득전에 발생한 의무에 대하여도 이를 승계한다.</p>